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67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감면기간 확대(윤준병 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형동의원안, 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3),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강명구의원안(2), 주진우의원안)) ····· 3

Ⅰ. 개요

1. 윤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67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23.

(3) 회 부 일 : 2025. 7.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에 있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공장 이전은 부지 확보, 건설, 설비 이전, 인력 이동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최근의 경제 상황 변화 및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2025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공장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로 인해 지방으로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60조제2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감면기간 확대(윤준병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형동의원안, 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3),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강명구의원안(2), 주진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0조)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수도권 밖의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광역시(기장군·달성군·군위군, 산업단지 제외)	○ (현행과 같음)
○ 업종요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현행과 같음)
○ 특례: 공장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강명구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2026. 1. 1.(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강명구의원안)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1조)	○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정안
○ 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법인	○ (현행과 같음)
○ 업종요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현행과 같음)
○ 특례: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권영진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2026. 1. 1.(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을 것 -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 (현행과 같음)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1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table>
<tr><th></th><th>낙후지역[1]</th><th>그 외 지역</th></tr>
<tr><td>수도권[2]</td><td>5년 100%
+2년 50%</td><td>감면 없음</td></tr>
<tr><td>수도권
연접지역[3]</td><td>5년 100%
+2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
<tr><td>지방광역시</td><td>7년 100%
+3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
<tr><td>중규모도시[4]</td><td>7년 100%
+3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
<tr><td>그 외</td><td>10년 100%
+2년 50%</td><td>7년 100%
+3년 50%</td></tr>
</table>
1」 인구감소, 성장촉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 적용기한:
2025. 12. 31.</td>
<td>○ (현행과 같음)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정부안)
<table>
<tr><th></th><th>낙후지역</th><th>그 외 지역</th></tr>
<tr><td>수도권</td><td>5년 100%
+3년 50%</td><td>감면 없음</td></tr>
<tr><td>수도권
연접지역</td><td>5년 100%
+3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
<tr><td>지방광역시</td><td>7년 100%
+4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
<tr><td>중규모도시</td><td>10년 100%
+5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
<tr><td>그 외</td><td>10년 100%
+5년 50%</td><td>7년 100%
+4년 50%</td></tr>
</table>
○ 적용기한:
2027. 12. 31.(윤영석의원안)
2028. 12. 31.(한병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29. 12. 31.(김형동의원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권영진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2026. 1. 1.(한병도의원안, 김형동의원</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td><td>안, 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td></tr>
<tr><td>○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td><td>○ 적용기한 연장</td></tr>
<tr><td>○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것
-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 감면대상: ①의 금액에 ②와 ③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등 제외한 금액(①)
-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비율(②)
- 위탁가공무역 외 매출비율(③)</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td><td>○ <u>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정부안)</u></td></tr>
<tr><td>
<table>
<tr><th></th><th>나후지역[1]」</th><th>그 외 지역</th></tr>
<tr><td>수도권[2]」</td><td>5년 100%
+2년 50%</td><td>감면 없음</td></tr>
<tr><td>수도권
연접지역[3]」</td><td>5년 100%
+2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
<tr><td>지방광역시</td><td>7년 100%
+3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
<tr><td>중규모도시[4]」</td><td>7년 100%
+3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
<tr><td>그 외</td><td>10년 100%
+2년 50%</td><td>7년 100%
+3년 50%</td></tr>
</table>
</td><td>
<table>
<tr><th></th><th>나후지역</th><th>그 외 지역</th></tr>
<tr><td>수도권</td><td>5년 100%
+3년 50%</td><td>감면 없음</td></tr>
<tr><td>수도권
연접지역</td><td>5년 100%
+3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
<tr><td>지방광역시</td><td>7년 100%
+4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
<tr><td>중규모도시</td><td>10년 100%
+5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
<tr><td>그 외</td><td>10년 100%
+5년 50%</td><td>7년 100%
+4년 50%</td></tr>
</table>
</td></tr>
<tr><td>1」 인구감소, 성장촉진, 고용·산업위기지역</td><td>○ <u>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주진우의원안)</u></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td><td>
<table>
<tr><th></th><th>낙후지역</th><th>그 외 지역</th></tr>
<tr><td>수도권</td><td>5년 100%
+2년 50%</td><td>감면 없음</td></tr>
<tr><td>수도권
연접지역</td><td>7년 100%
+2년 50%</td><td>7년 100%
+2년 50%</td></tr>
<tr><td>지방광역시</td><td>9년 100%
+3년 50%</td><td>7년 100%
+2년 50%</td></tr>
<tr><td>중규모도시</td><td>9년 100%
+3년 50%</td><td>7년 100%
+2년 50%</td></tr>
<tr><td>그 외</td><td>10년 100%
+2년 50%</td><td>7년 100%
+3년 50%</td></tr>
</table>
*감면개시기한: 5년→7년(주진우의원안)
</td></tr>
<tr><td>○ 적용기한:
2025. 12. 31.</td><td>○ 적용기한:
2027. 12. 31.(윤영석의원안)
2028. 12. 31.(한병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29. 12. 31.(김형동의원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권영진의원안, 강명구의원안, 주진우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2026. 1. 1.(한병도의원안, 김형동의원안, 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강명구의원안, 정부안, 주진우의원안)</td></tr>
</table>

*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한병도의원안 2025. 4. 15. 발의(의안번호 9837), 김정재의원안 2025. 5. 8. 발의(의안번호 10406), 김형동의원안 2025. 7. 7. 발의(의안번호 11306), 권영진의원안 2025. 7. 1. 발의(의안번호 11194), 윤영석의원안 2025. 7. 23. 발의(의안번호 11674), 윤영석의원안 2025. 7. 25. 발의(의안번호 11717), 윤영석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69), 추경호의원안 2025. 8. 19. 발의(의안번호 1224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2. 발의(의안번호 12931), 강명구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77), 주진우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52), 강명구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2993)

□ 개정안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확대하고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정부안)]

	낙후지역[1]		그 외 지역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수도권[2]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 감면 없음 >	
수도권 연접지역[3]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4]	7년 100% +3년 50%	10년 100% +5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10년 100% +5년 50%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2」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4」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 구체적으로 정부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낙후지역[1)]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는데, 개정안은 50%의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여 총 8년간 감면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등 수도권 연접지역 또는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등 중규모도시와 지방광역시 중 낙후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현행법상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50%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광역시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혜택이 적용되는데 50%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고, 중규모도시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행법상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최초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진우의원안은 본사이전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개시기한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100%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 및 대도시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3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전국 인구밀도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은 2023년 기준 52.3%로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수도권 인구 및 인구밀도 현황]

(단위: 천명,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전국	51,836	516	51,745	515	51,628	514	51,713	515	51,751	515
수도권	26,021	2,193	26,054	2,195	26,053	2,195	26,190	2,206	26,304	2,215

자료: 통계청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명목)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1,936	2,008	2,043	2,062	2,224	2,328	2,404
수도권	993	1,046	1,066	1,091	1,175	1,229	1,258
수도권 비중	51.3%	52.1%	52.2%	52.9%	52.8%	52.8%	52.3%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소득(잠정), 2024. 12.

□ 개정안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과세특례의 감면기간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임.

첫째,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본사·본점 52.06%(사업체 수 기준), 64.67%(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2], 2,764개 상

장사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1,103개로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며 경기도(807개)와 인천광역시(96개) 등 수도권 전체로 본다면 약 73%의 상장사가 집중되어 있음.

기업 이전 조세특례제도 이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도시개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 각종 특구제도 실시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으로의 기업 집중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둘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동 조세특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인정되므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동 조세특례에 대한 수혜기업들의 높은 사전 인지도(본사 78.0%, 공장 65.4%)하에 세금감면 제도가 기업이전 결정에 기여(본사 46.4%, 공장 51.5%)한 것으로 분석되었고[3], 기업성과(투자, 고용 및 생산성 증대)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본사 이전 특례는 기업의 투자 개선, 공장 이전 특례는 생산과 투자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4]

또한, 조세감면 혜택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고용이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세특례가 전체적으로 지역 고용을 증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5]

---

2) 통계청, 'KOSIS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3)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4)-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2. 9.

4)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4)-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2. 9.

5)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다른 유사 조사특례 제도 대비 가장 장기간의 감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본 제도의 감면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각종 지역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은 위기지역(7년)을 제외하면 최대 5년까지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지역특구 감면제도 개요]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위기지역 창업기업(§99의9)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 * 2025년 6월말 기준 해당지역 없음	5년 100% 2년 50%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 구역(낙후지역), 여수해양박람회,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구 (§121의17)	창업 기업	제조업・엔지니어링・전기통신업 등 : 20억원 이상 투자 + 30명 이상 고용 연구개발업 :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물류업 : 10억원 이상 투자 + 15명 이상 고용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제주투자 진흥지구 (§121의9)	입주 기업	총사업비가 2천만달러 이상의 관광업, 5백만달러 이상의 문화산업・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청소년수련시설사업・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교육사업・의료산업・교육원・연수원・첨단기술활용산업 등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12의2)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3년 100% 2년 50%

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121의8)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121의20)	문화 관련 산업 : 5억원 이상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청소년수련시설사업・교육원운영사업 : 30억원 이상 * 해당지역 : 광주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121의21)	금융 및 보험업 : 20억원 이상 + 10명 이상 고용 * 해당지역 : 서울, 부산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121의22)	보건의료기술산업(해당지역: 충북 오송, 경북 대구) 식품산업(해당지역: 전북 익산)	

둘째, 법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액감면 기간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6)]

6)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주더도 세부담 형평성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 하에 도입된 제도임.

정책적 목적을 위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7]된다는 점에서 적용 배제 대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효과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수혜기업 1,584개 중 이전한 공장의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8] 경기도(1,116개)로 이전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인천(206개), 충청남도(85개), 충청북도(56개) 순서로 나타나 수도권 인근으로 공장 이전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9]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7)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도권 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8) 단, 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본사와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공장이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만 감면대상에 포함함.

9)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지역별 공장 이전 세액감면 수혜기업 수]

(단위: 개)

지역	합계	수혜기업 수		
		법인의 공장 이전	중소기업 수도권 안	중소기업 수도권 밖
강원도	22	10	1	11
경기도	1,116	75	840	201
경상남도	4	1	0	3
경상북도	10	3	0	7
광주광역시	4	1	1	2
대구광역시	3	2	0	1
대전광역시	12	3	4	5
부산광역시	2	1	1	0
서울특별시	17	15	2	0
세종특별자치시	5	2	2	1
울산광역시	6	3	0	3
인천광역시	206	16	157	33
전라남도	12	2	1	9
전라북도	13	4	2	7
제주특별자치도	3	1	1	1
충청남도	50	2	4	44
충청북도	56	7	4	45
전체	1,584	206	1,012	366

주: 2016년~2023년의 기간 동안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